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직렬을 보건소장으로 임용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함양군

내 용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군 보건소(직속기관)에는 보건·의료기술·간호직렬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함양군에서는 2016. 5. 16.자 ○○군보건소장인 지방○○○○○○○○ ○○○가 명예퇴직하자 같은 날 ○○○○담당 지방○○○○ ○○○를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법정대리)지정하였으나,

이 후 개인사정으로 지방○○○○ ○○○가 2016. 7. 1.자로 공로연수에 들

어가게 되자 보건소의 조직 내 안정을 도모하고자 자격이 없는 지방○○○○○
○○○를 2016. 7. 4.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군 보건소장으로 임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함양군수는

의사 면허가 있거나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로 임용하시기 바랍니다.